

광양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안 심사 보고

의안 번호	4388
----------	------

2025. 12. 04.
총무위원회

1. 심사 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 11. 10. 광양시장
- 나. 회부 일자: 2025. 11. 10. 회부
- 다. 상정 일자: 제34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2025. 12. 04.) 상정,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2. 제안 요지

가. 제안 이유

- 저출산의 주요 원인인 양육부담을 해소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함.

나. 주요 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지원기준 관한 사항 (안 제5조)
-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지원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3. 검토 의견

- 이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법적 근거를

충실히 반영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은,

- 지원 대상 (안 제4조)

- 신청일을 기준으로 보호자와 아이가 ①광양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②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보호자와 아이의 관내 주소지 의무 규정

- 지원 기준 (안 제5조)

- 한 자녀: 본인부담금 30% 지원
- 두 자녀 이상: 본인부담금 50% 지원

- 지원 신청 (안 제6조)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관할 주소지 읍·면·동 제출 후 시청(여성가족과)에서 결정

○ 상위 법령 및 관련 기준에 맞으며, 양육부담을 해소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함.

○ 다만, 향후 세부 사업 운영 시 중앙·지방정부 사업과의 중복성, 예산 부담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회의록 참조.

5.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출석위원 6명)

- 지원대상 확대 시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함.

6.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 없음.

붙임 광양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안

광양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 조성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보호자와 아이가 광양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제5조(지원 기준)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 자녀: 본인부담금의 30% 지원

2. 두 자녀 이상: 본인부담금의 50% 지원

제6조(지원 신청 등) ① 제5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 대상, 지원 기준 등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본인부담금의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지원 중지 및 환수) ① 시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해야 한다.

1. 지원 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중지 대상자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성별	남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서비스 이용 대상자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과의 동거여부	서비스 유형 (담당자 확인)		
					가형 <input type="checkbox"/> 나형 <input type="checkbox"/> 다형 <input type="checkbox"/> 라형 <input type="checkbox"/> 마형 <input type="checkbox"/>		
					가형 <input type="checkbox"/> 나형 <input type="checkbox"/> 다형 <input type="checkbox"/> 라형 <input type="checkbox"/> 마형 <input type="checkbox"/>		
					가형 <input type="checkbox"/> 나형 <input type="checkbox"/> 다형 <input type="checkbox"/> 라형 <input type="checkbox"/> 마형 <input type="checkbox"/>		
연락처	자택				휴대전화		
입금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양육공백 유형	맞벌이 <input type="checkbox"/> 취업 한부모 <input type="checkbox"/> 다자녀 <input type="checkbox"/> 장애부모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 신청인은 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이의 보호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광양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광 양 시 장 귀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광양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 _____ (서명 또는 인)							